

2023년도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1 관련근거 및 목적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9조(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해외 체육학문 연구, 교육훈련 지원 등 경력개발 기회 제공 및 복지 증진 도모
- 유학 복귀 후, 국외경험 공유 및 후진 양성을 통한 체육발전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국외유학 학자금, 체재비 등 지원
- (자격요건) 외국어 시험 기준 점수 이상 취득 * [붙임1] 참조
* 유학하고자 하는 기관의 입학 허가(또는 초청)를 득해야 함
- (지원내역)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예산범위 내)의료보험료
- (지원기간)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1년 이내

3 세부 추진계획

- (선정절차)

① 신청서류 제출 및 신청	▶	② 경기단체 취합·제출	▶	③ 대한체육회장 추천	▶	④ 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선정	▶	⑤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지급	
신청자 → 경기단체		경기단체 → 체육회		체육회 → 공단		공단		공단	
공고일~8.25.(금)						▶	9월 초	▶	9월 중

- (선정방법)

- 선정 인원 내 지원 : 자격요건 검증 후 지원
- 선정 인원 초과 지원 : 평가위원회* 개최 후 대상자 선정
* 지원 가능인원 초과 시 별도 계획수립 및 시행([붙임4] 종합평가표 활용 면접평가 등)

○ 제출서류 : 지침 제39조제3항 및 별지 서식 등 총 10종 * [붙임2] 참조

용 도	해당 서류
접수 및 검토	(서식)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 1부 ○ 국외수학계획서 1부 * 평가위원회 개최 시 평가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외) ○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해당 외국어 성적표 1부 * [붙임1] 참조 * 지침 별표11 기준 점수 이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공고일 기준) ○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 및 실적 확인가능 자료(경기실적증명서 등)
지 급	○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또는 고지서) 1부 ○ 국외계좌 본인확인서(은행명, SWIFT, 예금주명 및 계좌번호 명시) 1부 * 국내계좌 수령 시, 일반예금 계좌 사본 1부

□ (지급기준) 지침 제39조8항 * [붙임3] 참조

구 분	지급기준
입학금, 등록금	○ 납입영수증(또는 고지서)에 따른 실 납부액
항공료, 체재비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준용 - 체재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급·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는 날 수대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생략(30일 이내 준비 및 정리기간 포함 가능) - 항공료 : 「공무원 여비 규정」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의료보험료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

* 지원액 외화산출 및 지급은 '지원확정일' 또는 '송금일' 환율을 적용

□ (지급방법 및 시기)

- 학자금·체재비: 첫 학기는 해당 교육기관 입학일정에 따라 지급, 이후 학자금은 교육기관 등록 전후, 체재비는 최대 6개월 단위 신청·지급
- 항공료: 출국 및 귀국 시 유학자의 신청에 따름

4 대상자 관리

□ (지급요건)

- 다음 각 목의 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

가. 매 학기 이수 후

- 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성적증명서 사본 또는 단기 교육·연구 보고서 1부
-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1부

나. 국외유학 과정 종료 후

- 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 유학결과보고서 또는 학위논문 사본 1부

-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B⁰(100점 환산, 80점) 이상일 것
- 사전 통보 없이 유학대상국, 교육·연수·훈련기관 및 연구 분야 변경 시 변경 2개월 이전에 통보 * 목적예산 검토 후 계속 지원여부 결정

□ (복지후생금 지급 중지)

-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가.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나.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또는 같은 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복지후생금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 보상금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또는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사후 관리)

○ 전 과정 이수·귀국 후 지원기간 이상 체육관련 분야에서 활동

가. 유예할 수 있는 경우

- 귀국 후 국내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자비로 계속 유학중인 경우

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유학을 중단한 경우
- 그 밖에 체육 관련 활동이 곤란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붙임 1. 어학시험 및 기준표 1부.

2. 유학지원 신청 및 추천 관련 서식 각 1부.

3. 항공료 및 체재비 지급기준 관련 법령 발췌 각 1부.

4.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종합평가표 1부. 끝.

붙임 1 어학시험 및 기준표

[별표 11]

어학시험 및 기준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9조제4항 관련)

구 분		주관	단기훈련과정 및 연구과정	대학, 대학원과정
1. 영 어	가. NEW TEPS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600점 만점 기준 236점 이상	입학 허가 시 요구하는 성적 이상
	나. TOEIC	미국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	990점 만점 기준 625점 이상	
	다. TOEFL iBT	한미교육위원단	120점 만점 기준 71점 이상	
2. 중국어	HSK	중국국가한어 수평고시위원회	신 HSK 5급 180점 이상	
3. 일 어	JPT	駿台(순다이) 학원 (동경고등수험강습회)	990점 만점 기준 610점 이상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N3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어학시험 및 그 밖의 언어			공인 어학시험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붙임 2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신청 관련 서식**

서 식	
①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7p
② 국외수학계획서	8p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9p

* (서식 외) 입학허가서(초청장), 입학 · 등록금 영수증, 국외계좌 정보, 보증보험증권, 외국어 성적표, 병적증명서 등 제출 필요

①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4호 서식] <제정 2022.8.31.>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한글/영문)		종목	주민등록번호
	소속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국제대회 입상실적	대회명		입상종목	입상순위
	대회명		입상종목	입상순위
최종학력	학교		학과	[] 졸업 [] 중퇴 [] 재학
유학계획	유학기관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유학기간			유학과정
	전공분야			
	유학목적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추천기관 (직인) 추천인(직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대한체육회장 귀하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및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9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국외유학 교육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체육회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2.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3.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
담당자 확인사항	1.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2.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3.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전문 설문조사 업체 2. 목적: 수혜자 만족도, 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각종 설문조사 3.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4. 보유·이용기간: 제공받은 날로부터 처리목적 달성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그 이후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② 국외수학계획서

성 명		유학(연수) 기관	
유학과정	대학 / 대학원 / 훈련과정 / 연구과정	전공(연구) 분야	
지원동기			
지원필요성			
학업수행계획			
교육과정 종료 후 계획			

- A4 본 페이지 포함 2장 이내, 여백(위 20, 아래 15, 왼쪽·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글자모양(글자체 휴먼명조, 본문내용 12p,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여백 왼쪽·오른쪽 0.0pt, 첫줄 보통, 줄간격 160%, 문단 위·아래 0.0pt)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안내(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종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국가대표경력, 최종출신학력, 유학계획, 계좌번호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선정심사, 민원처리, 지급이력 관리 등	영구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선정 및 지급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필수항목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선택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안내(선택)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항공권 정보(출도착지, 출입국일자 등), 병역사항	필수사항과 동일함	영구

※ 위 선택항목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상 심사 및 항공료 지급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선택항목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처리 근거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체육인 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전문 설문조사 업체	수혜자 만족도, 근로·생활 실태, 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각종 설문조사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제공받은 날로부터 처리목적 달성될 때까지 보유·이용하며 그 이후 파기함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귀중

붙임 3

항공료 및 체재비 지급 기준 관련 법령 발췌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별표 3]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제39조제3항 관련)

1. 항공료: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왕복항공료
2. 체재비
 -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급·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하되, 6개월 미만의 훈련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6개월 이상의 훈련인 경우에는 85퍼센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나. 3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6개월 이상의 훈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미합중국 통화 500달러의 직무훈련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 4급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6개월 이상의 훈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미합중국 통화 300달러의 직무훈련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라. 러시아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지근무수당(5급·5등급 정액)의 50퍼센트를 훈련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
 - 마. 2개월 미만의 훈련의 경우 최초 15일간은 가목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바. 체재비의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3.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 국가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에 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4. 생활준비금: 미합중국 통화 500달러
5. 귀국이전비: 아시아지역은 미합중국 통화 300달러, 그 밖의 지역은 미합중국 통화 600달러

2.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 항공료 관련

국의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1등석)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2등석)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달리화 지급 공관)

구분	대상지역
가지역	스리랑카, 이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나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몽골, 미얀마,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벨라루스, 볼리비아, 필리핀(세부), 수단,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알제리, 엘살바도르, 예멘, 온두라스,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조지아,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콜롬비아, 파라과이
다지역	가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르완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모로코,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아세안, 발리),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탄자니아, 파나마, 페루, 피지, 필리핀(마닐라)
라지역	나이지리아(라고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세네갈, 오만, 우루과이,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자메이카, 칠레, 카메룬, 케냐, 쿠웨이트,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마지역	나이지리아(아부자), 동티모르, 레바논,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요르단, 적도기니(말라보), 짐바브웨,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파푸아뉴기니
바지역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사지역	이스라엘, 중국(홍콩), 앙골라,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아지역	
자지역	투르크메니스탄
차지역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생략) ⋮	⋮ (생략) ⋮	⋮ (생략) ⋮	⋮ (생략) ⋮																																																																												
4. 재외직 분야	가. 재외 근무수당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1) 지급액 가) 달러 지급국 (월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 계급· 직무등급</th> <th>가</th> <th>나</th> <th>다</th> <th>라</th> <th>마</th> <th>바</th> <th>사</th> <th>아</th> <th>자</th> <th>차</th> </tr> <tr> <th>지역</th> <th>지역</th> <th>지역</th> <th>지역</th> <th>지역</th> <th>지역</th> <th>지역</th> <th>지역</th> <th>지역</th> <th>지역</th> </tr> </thead> <tbody> <tr> <td>14등급</td> <td>3,975</td> <td>4,204</td> <td>4,370</td> <td>4,555</td> <td>4,775</td> <td>5,002</td> <td>5,177</td> <td>5,361</td> <td>5,546</td> <td>5,775</td> </tr> <tr> <td>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 급, 소장·준장 2·3급, 고위공무 원단 나등급, 9등 급부터 11등급까 지, 대령·중령, 국 가정보원 전문관(3 급 상당 직위) 4급, 6등급부터 8 등급까지, 소령, 국 가정보원 전문관(4 급 상당 직위)</td> <td>3,434</td> <td>3,630</td> <td>3,763</td> <td>3,921</td> <td>4,106</td> <td>4,302</td> <td>4,449</td> <td>4,607</td> <td>4,764</td> <td>4,961</td> </tr> <tr> <td>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td> <td>2,387</td> <td>2,517</td> <td>2,583</td> <td>2,688</td> <td>2,809</td> <td>2,939</td> <td>3,034</td> <td>3,140</td> <td>3,246</td> <td>3,376</td> </tr> <tr> <td>6급, 4등급</td> <td>2,191</td> <td>2,310</td> <td>2,364</td> <td>2,460</td> <td>2,568</td> <td>2,686</td> <td>2,772</td> <td>2,867</td> <td>2,963</td> <td>3,082</td> </tr> <tr> <td>7급, 3등급</td> <td>2,032</td> <td>2,140</td> <td>2,184</td> <td>2,272</td> <td>2,370</td> <td>2,479</td> <td>2,556</td> <td>2,645</td> <td>2,732</td> <td>2,841</td> </tr> </tbody> </table>				구분 계급· 직무등급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14등급	3,975	4,204	4,370	4,555	4,775	5,002	5,177	5,361	5,546	5,775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 급, 소장·준장 2·3급, 고위공무 원단 나등급, 9등 급부터 11등급까 지, 대령·중령, 국 가정보원 전문관(3 급 상당 직위) 4급, 6등급부터 8 등급까지, 소령, 국 가정보원 전문관(4 급 상당 직위)	3,434	3,630	3,763	3,921	4,106	4,302	4,449	4,607	4,764	4,961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87	2,517	2,583	2,688	2,809	2,939	3,034	3,140	3,246	3,376	6급, 4등급	2,191	2,310	2,364	2,460	2,568	2,686	2,772	2,867	2,963	3,082	7급, 3등급	2,032	2,140	2,184	2,272	2,370	2,479	2,556	2,645	2,732	2,841
구분 계급· 직무등급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14등급	3,975	4,204	4,370	4,555	4,775	5,002	5,177	5,361	5,546	5,775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 급, 소장·준장 2·3급, 고위공무 원단 나등급, 9등 급부터 11등급까 지, 대령·중령, 국 가정보원 전문관(3 급 상당 직위) 4급, 6등급부터 8 등급까지, 소령, 국 가정보원 전문관(4 급 상당 직위)	3,434	3,630	3,763	3,921	4,106	4,302	4,449	4,607	4,764	4,961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87	2,517	2,583	2,688	2,809	2,939	3,034	3,140	3,246	3,376																																																																					
6급, 4등급	2,191	2,310	2,364	2,460	2,568	2,686	2,772	2,867	2,963	3,082																																																																					
7급, 3등급	2,032	2,140	2,184	2,272	2,370	2,479	2,556	2,645	2,732	2,841																																																																					
나) 현지화 지급국 (월지급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 계급· 직무등급</th> <th>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 달러)</th> <th>일본, 요코하마 (엔)</th> <th>고베, 나고야,니 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엔)</th> <th>영국 (파운드)</th> <th>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 (유로)</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계급· 직무등급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 달러)	일본, 요코하마 (엔)	고베, 나고야,니 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엔)	영국 (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 (유로)																																																																						
구분 계급· 직무등급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 달러)	일본, 요코하마 (엔)	고베, 나고야,니 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엔)	영국 (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 (유로)																																																																										

14등급	6,954	645,055	589,680	3,600	3,867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 급, 소장·준장	5,946	549,852	504,082	3,132	3,300
2·3급, 고위공무 원단 나등급, 9등 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 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4,897	451,805	415,197	2,653	2,714
4급, 6등급부터 8 등급까지, 소령, 국 가정보원 전문관(4 급 상당 직위)	4,249	392,694	360,203	2,353	2,362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891	358,150	329,957	2,187	2,157
6급, 4등급	3,535	326,821	299,711	2,022	1,969
7급, 3등급	3,243	298,035	274,964	1,888	1,798

구분 계급· 직무등급	스페인, 리스팔마스그 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유 로)	터키, 이스탄불 (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 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네스코 (유로)	핀란드 (유로)	덴마크 (크로네)
14등급	4,394	4,545	4,572	4,747	36,604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749	3,876	3,897	4,048	31,203
2·3급, 고위공무원 단 나등급, 9등급부 터 11등급까지, 대 령·중령, 국가정보 원 전문관(3급 상 당 직위)	3,081	3,230	3,204	3,327	25,645
4급, 6등급부터 8 등급까지, 소령, 국 가정보원 전문관(4 급 상당 직위)	2,680	2,808	2,788	2,892	22,370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446	2,564	2,543	2,640	20,347
6급, 4등급	2,235	2,341	2,323	2,410	18,572
7급, 3등급	2,038	2,134	2,117	2,196	16,931

구분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제네바	캐나다, 밴쿠버,	호주, 시드 니, 멜번	뉴질랜드, 오클랜드
----	---------------	--------------	-------------	--------------	-----------------	---------------

계급· 직무등급			(프랑)	몬트리올, 토론토 (달러)	브리즈번 (달러)	(달러)
14등급	44,152	45,180	8,201	5,921	6,397	8,580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 급, 소장·준장	37,637	38,513	6,991	5,052	5,456	7,321
2·3급, 고위공무 원단 나등급, 9등 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 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30,917	31,660	5,743	4,155	4,547	6,019
4급, 6등급부터 8 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 (4급 상당 직위)	26,885	27,521	4,994	3,615	3,957	5,239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4,511	25,124	4,552	3,299	3,613	4,782
6급, 4등급	22,367	22,932	4,154	3,011	3,299	4,367
7급, 3등급	20,402	20,899	3,790	2,749	3,009	3,984

계급· 직무등급	구 분	대만 (달러)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우한, 다롄 (런민비)	중국, 상하이 (런민비)
14등급		169,530	31,171	32,551
1급, 고위공무원단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144,513	26,647	27,826
2·3급, 고위공무원단 나 등급, 9등급부터 11등급 까지, 대령·중령, 국가정 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118,717	22,245	23,227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		103,232	19,296	20,151

			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94,117	17,675	18,456																																
			6급, 4등급	85,880	16,054	16,763																																
			7급, 3등급	78,339	14,730	15,38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 계급·직무등급</th> <th>애틀란타, 휴스턴, 하갓나, 델리스, 필라델피아 (달러)</th> <th>미국,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달러)</th> <th>호놀룰루 (달러)</th> </tr> </thead> <tbody> <tr> <td>14등급</td> <td>4,601</td> <td>4,821</td> <td>4,989</td> </tr> <tr> <td>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td> <td>3,957</td> <td>4,146</td> <td>4,288</td> </tr> <tr> <td>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td> <td>3,290</td> <td>3,446</td> <td>3,560</td> </tr> <tr> <td>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td> <td>2,877</td> <td>3,011</td> <td>3,110</td> </tr> <tr> <td>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td> <td>2,650</td> <td>2,772</td> <td>2,862</td> </tr> <tr> <td>6급, 4등급</td> <td>2,421</td> <td>2,534</td> <td>2,614</td> </tr> <tr> <td>7급, 3등급</td> <td>2,236</td> <td>2,338</td> <td>2,411</td> </tr> </tbody> </table>				구분 계급·직무등급	애틀란타, 휴스턴, 하갓나, 델리스, 필라델피아 (달러)	미국,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달러)	호놀룰루 (달러)	14등급	4,601	4,821	4,989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957	4,146	4,288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3,290	3,446	3,560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877	3,011	3,110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650	2,772	2,862	6급, 4등급	2,421	2,534	2,614	7급, 3등급	2,236	2,338	2,411
구분 계급·직무등급	애틀란타, 휴스턴, 하갓나, 델리스, 필라델피아 (달러)	미국,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달러)	호놀룰루 (달러)																																			
14등급	4,601	4,821	4,989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957	4,146	4,288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3,290	3,446	3,560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877	3,011	3,110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650	2,772	2,862																																			
6급, 4등급	2,421	2,534	2,614																																			
7급, 3등급	2,236	2,338	2,411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5.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4] : 준비 및 정리기간 관련

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제39조제4항 관련)

구 분	준비 및 정리기간
3개월 미만	9일 이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일 이하
6개월 이상 1년 미만	17일 이하
1년 이상	30일 이하

붙임 4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종합평가표(평가위원회 개최 시)

평가항목	배점항목 및 기준		배점	비고
① 국제대회 입상실적 (정량평가)	비 중		40점	· 제출서류 및 공단 시스템 내 포상금 평가점수 활용
	구간	포상금 평가점수 150점 이상	40	
		포상금 평가점수 90점 이상 150점 미만	34	
		포상금 평가점수 40점 이상 90점 미만	28	
		포상금 평가점수 20점 이상 40점 미만	22	
		포상금 평가점수 10점 이상 20점 미만	16	
		포상금 평가점수 10점 미만	10	
② 국외수학계획서 기반 면접평가 (정성평가)	비 중		60점	· 계획서 작성내용 토대 면접 평가 시행 및 평가 점수부여
	1. 지원목적의 명확성		15	
	2. 학업수행에 대한 열의		15	
	3. 학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15	
	4. 체육발전 기여 가능성		15	
계	-		100점	-

* 최종점수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상위자를 우선하여 최종 순위배정
(그럼에도 동률 시 성과포상금 누적평가점수,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활동기간 순서로 판단)

※ 국외수학계획서 면접평가(정성평가) 세부 기준

세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진학목적의 명확성	15	15	12	9	6	3
2. 학업수행에 대한 열의	15	15	12	9	6	3
3. 학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15	15	12	9	6	3
4. 체육발전 기여 가능성	15	15	12	9	6	3
계	60	-				